

『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5월 26일

나. 발 의 자 : 윤종호, 김상조, 김인배, 김재상, 김정곤, 박교상
안장환, 윤영철, 임춘구, 정근수, 한성희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5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6월 3일
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윤 종 호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발생 증가로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, 점차 다양화·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음.
- 이에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함으로써,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범죄예방 환경설계 목적(안 제1조), 공공기관 등의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을 정함(안 제3조)
-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
-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-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설정(안 제6조)
-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적용범위 규정(안 제7조)
-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 설치(안 제8조)
-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- 홍보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, 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「국토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, 국토교통부령 「도시개발법 시행규칙」 제9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- 본 「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」은,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해 각종 범죄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, 구미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○ 주요 내용은

용어의 정의 규정, 기본원칙,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, 기본계획의 수립,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의 설치 등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있음.

○ 검토결과,

본 조례안은

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하여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점차 다양화,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력 등 공권력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어,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의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,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
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